

QI 관련 위험안내/투자제한 동의서

■ 해외상품 투자 시 미국 세법 관련 위험 안내

- 가입대상: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(이중국적자 제외)이면서 “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*”가 아닌 자
-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의거 “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”는 미국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증권에 대한 거래가 제한
- 예탁결제원 서비스 대상 등 실제 업무 처리에 있어 규정 준수를 위해 해외상품 투자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로 한정
- 해외상품 투자는 내국법인에 한해 가능하며, 외국법인, 국내지점은 해외상품 투자가 제한되며,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자회사는 가능

* 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: 미국 시민권자(이중국적자 포함), 미국 영주권자,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

■ 자격요건 변경 시 유의사항

- 해외상품 투자 체결시점부터 이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, 국내외 과세관청(미국 국세청(IRS) 포함)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, 비용,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 시 국내 거주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과 외국 정부간의 협약세율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음
 - 가) 계좌주의 지위가 “미국인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”로 변경되는 경우
 - 나) 계좌주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세법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외 국가로 변경되는 경우
- ※ 계좌주의 세법상 거주지 국가와 외화소득 발생 국가간의 협약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주가 별도로 세무자문을 받아 해당 국가에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.

■ 미국 국세청(IRS) 자료제공

-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경우, 미국 국세청(IRS)이 QI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- 상기의 경우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고객은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(고객이 미국 국세청(IRS)에서 요청한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음)

본 인 성명 : (인/서명)

(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) 대리인 성명 : (인/서명)

년 월 일